

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5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2월 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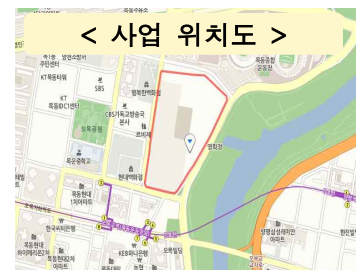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- 가. 목동재난체험관은 국내 최초 대심도 저류터널인 “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”에 대한 홍보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을 디지털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임
- 나. 재난 발생시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,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디지털 체험 학습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 및 행동요령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,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” 규정에 의거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임
- 다.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간 (재)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시설개요

- 사업명 :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(재위탁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
- 준공일 : 2019.12.15.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1,252㎡ (건축면적 568㎡)



- 1층 : 인포메이션, 홍보관, 디지털체험관, 디지털아카이브
- 2층 : VR체험, 재난안전체험(홍수, 태풍, 지진, 쓰나미, 가뭄, 폭염), 종합 영상관(개인행동 리뷰 및 강평)

※ 옥상 : 안전행동 요령 설명패널, 휴게실

- 위탁법인 : 공개모집
- 운영인력 : 6명 (센터장 1명 외 5명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026. 5.30. ~ 2029. 5.29.(3년)
- 위탁사무
 - 서울 재난 체험관의 종합운영계획 및 추진
 - 서울 재난체험관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시설 유지·관리
 - 재난교육 관련분야 연구조사, 대외 협력사업
 - 기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 사무 등
- 위탁운영 예산 : 1,198백만원(3년), 376백만원('26년)

※ '26년 산출근거 : 『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기준』

- 인건비 : 285,072 천원
 - 내용 : 기본급, 퇴직적립금, 사회보험(연금,건강,요양,고용,산재)
- 운영비 : 91,105 천원
 - 내용 : 업무추진비, 사무관리비(청소 등), 공공요금, 행사운영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(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제1항3호
 -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,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

-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(안전교육)
 - 제1호 :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 실시
 - 제2호 : 시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,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 위탁 가능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(수탁기관 선정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체험관 관람 연령대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다양한 흥미와 이벤트 연계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험과 운영전략 필요
-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, 대외 홍보 협력, 재난분야 연구 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전문 민간단체 운영 필요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

- '26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6. 1.15.)
-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(약칭 : 재난안전법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4조제1항(국가등의 책무)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- 제25조의4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제1항3호 :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·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- 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제1항1호 :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 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
○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- 제3조(시의 책무) 제1항 :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
- 제52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) 제1항 :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('26년 예산반영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이승아 (☎ 2133-3897)